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 회) |      |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 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이종호<br>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4. . .  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, 물류지원,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149호, 2024. 1. 30. 공포, 7. 3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법률 위임에 따라 우정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함  
(안 제14조제2항)

- 공공기관·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과 그 밖에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함

나. 법률이 정한 사업 이외의 업무(공익사업 등)에 대한 조문 정비  
(안 제14조제3항)

- 기존 단서조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이동함
- 기존 단서조항 각 호의 사업 중 개정 법률 후단의 사업이 아닌 업무(공익사업, 심의를 거친 사업)를 제3항의 각 호로 이동함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법인
3. 그 밖에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③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1. 우정사업과 관련된 공익사업 운영
2. 그 밖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”을 “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항·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4조(우정사업의 위탁) ① 과<br>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<br>17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<br>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<br>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<br>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<br>의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<br>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<br>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<br>수 있다. | 제14조(우정사업의 위탁) ① 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. <단서 삭제> |
| 1. <u>우정사업과 관련된 상품의<br/>개발·판매 및 그 부대사업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<u>우체국보험 청약심사·계약<br/>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<u>우정사업과 관련된 교육, 홍<br/>보 및 문화센터 운영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<u>우정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<br/>서비스·전산시스템의 개발·<br/>운영 및 그 부대사업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<u>우정사업과 관련된 시장의<br/>분석·연구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<u>우체국 콜센터 운영 및 고객<br/>관리 활동 지원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<u>우표류 제작업무와 우편망을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</u>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· 운영 및 그 부대사업</u>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8.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</u>  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|
| <u>험적립금의 운용 지원</u>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9.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</u>  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|
| <u>원</u>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10.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</u>  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|
| <u>산 관리·운영</u>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11. 우편물의 방문접수, 배송 및</u>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|
| <u>그 부대사업</u>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12. 우표 전시회 개최, 우표 전</u>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|
| <u>시관 설치·운영 및 우표 관</u>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련 웹사이트 구축·운영</u>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13. 우정사업과 관련된 공익사</u>  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|
| <u>업 운영</u>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14. 우정사업과 관련된 분쟁해</u>  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|
| <u>결 및 결산·회계 업무의 지</u>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원</u>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15. 우정사업과 관련된 제도개</u>  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|
| <u>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</u>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1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</u> | <u>&lt;삭 제&gt;</u>      |
| <u>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</u>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</u>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거친 사업</u>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| <u>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</u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</u> |

<신 설>

② (생 략)

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
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법인

3. 그 밖에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③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1. 우정사업과 관련된 공익사업 운영

2. 그 밖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영기획실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  | (044) 200 - 8113 |